

2023 Spring Digital Finance MBA

**A Case Study on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tax treatment of virtual assets
using audit report**

Hong, Seung Youl

August 2023

2023 Spring Digital Finance MBA

**감사보고서를 활용한 가상자산의
회계 및 법인세 사례연구**

홍 승 열

August 2023

Executive Summary (English)

Although the number of companies holding virtual assets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 are only accounting guideline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s, and companies develop and apply accounting policies for the rest, so accounting is not unified in practice. As there is a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companies and auditors regarding the accounting treatment of virtual assets, and comparability between companies is also hindered,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nounced in July 2023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draft) and the Guidelines for Accounting Supervision (draft) related to virtual assets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new disclosure requirements related to virtual assets. The issue of accounting for virtual assets also occurs in corporate tax.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Act, which adopts a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based on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a significant portion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taxable income, so a clear tax law guide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virtual asset accounting and provide guidelines for future corporate tax treatment. To this end, through the external audit report, we looked at the issue and status of accounting for issuance and holding of virtual assets of general corporations and virtual asset exchanges, and analyzed account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corporate tax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rom the point of view of domestic corporations, when issuing virtual assets, they are recognized as deferred revenue when the issue price is received and then accounted for at the time of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a change in interpretation is necessary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performance obligations in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which ar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duty determinism under the corporate tax law, while legal or economic obligations under the white paper remain. For virtual assets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that are traded from January 1, 2022, if the Corporate Tax Act newly establishes evaluation regulations and operates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corporate tax laws differently, this will also become an important tax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corporations, virtual asset capital gain is classified as domestic source other income, but the calculation method is the same as capital gain, so it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revised. It is hoped that this project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data for understanding corporate accounting when establishing the guidelines. Finally, the form of virtual assets will change into more diverse forms, and since the guidelines that cover all of them are limited, a corporate tax form is also needed to provide voluntary and transparent information for companies, which seems to be able to supplement the above limitations.

Executive Summary (Korean)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상자산 분류 관련 회계가이드만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어 실무상 회계처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도 저해되고 있어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관련 공시요구사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서(안)과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을 2023년 7월 발표하였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이슈는 법인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의 상당부분이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세법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행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법인세 세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일반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 회계처리 이슈와 현황을 살펴보고 법인세 신고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법인 관점에서 가상자산 발행시 발행대금을 수취한 시점에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시점에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발행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손익인식시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백서에 따른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권리 의무확정주의와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수행의무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해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평가규정을 신설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평가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한 세무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법인 관점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계산방식은 양도소득의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정을 고민해야 하는 이슈이다. 가이드라인 제정 시 본 프로젝트가 기업의 회계처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형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지침에는 한계에 있으므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법인세서식도 필요하며 이는 지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II. 가상자산 회계 및 법인세처리에 대한 이해	4
1. 가상자산의 개념	4
1) 가상자산의 의의	4
2) 가상자산의 구성	4
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기준	6
1) 국제회계기준 회계지침	6
2) 미국회계 지침	7
3) 우리나라 회계지침	7
3.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처리	8
1)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8
2)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8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8
III. 선행 연구	9
1. 국내 회계처리 선행연구	9
2. 국내 세무처리 선행연구	10
IV. 사례 분석	12
1.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개발	12
1) 회계기준	12
2) 감사보고서 사례	13
2.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14
1) 가상자산 발행	14
2) 가상자산 보유	17
3. 가상자산거래소	22
1)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방법	22
2)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회계 이슈	23

V. 전략적 제언	26
1. 국내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처리	26
1)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26
2) 가상자산의 발행	27
3) 가상자산의 보유	30
2. 외국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처리	30
VI. 결론 및 시사점	31
1. 요약 및 결론	31
2. 시사점	32
참고문헌	33

표목차

<표 1>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유가증권시장(2022년 말 기준).....	1
<표 2> 사례연구 대상기업 감사보고서(2022년) 현황	3
<표 3> 회계질의회신 중 가상자산 회계정책 개발 관련 주요 내용	12
<표 4>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개발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13
<표 5> 가상자산 개발비용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15
<표 6> 가상자산 발행매각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16
<표 7> 제3자로부터 가상자산 유상취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18
<표 8> 노드 운영에 따른 리워드 수익인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18
<표 9> 에어드랍 등 무상취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19
<표 10> 스테이킹 · 하드포크 · 에어드랍의 비교	20
<표 11>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21
<표 12> 용역 또는 투자의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21
<표 13>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취득 및 측정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23
<표 14> 가상자산거래소의 제3자 위탁 가상자산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25
<표 15> 가상자산 발행 관련 국세청 해석	28
<표 16>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 및 법인세 처리 사례	29

그림목차

<그림 1>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도	5
<그림 2> 국내 법인의 해외 ICO 진행 구조	14

I.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인 2024
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 동안 국회에 발의된 19건의 가상
자산¹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정한 것이다.

2022년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010조원으로 2022년 6월말(약 1,117
조원) 대비 10% 정도 하락하였고,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으로 2022년 6월
말(약 23조원) 대비 16% 하락하였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시가총액
의 10% 수준으로 급성장하였고,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². 이는 실물경제 위축 등에 따른 가격 하락과 테라-루나, FTX 등
부정적 사건으로 신뢰가 하락하여 시장 약세가 지속되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발행재단의
허위 유통량 공시 문제와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매
출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변경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하여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은 가
상자산 보유에 대한 해석만 있는 상태이다.

<표 1>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유가증권시장(2022년 말 기준)

구분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국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9조원	2,082조원
일 평균거래규모	3조원	9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KOSIS, 한국예탁결제원

¹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상자산(Virtual Asset), 암호자산(Crypto Asset), 암호통화(화폐)(Crypto Currency), 디지털통화(화폐)(Digital Currency), 가상통화(화폐)(Virtual Currency)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감사보고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²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 ’23.3.20)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종 업무계획에 ‘가상자산 거래’가 제외되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맞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공시요구사항을 신설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안)과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을 발표하였다.

2. 연구 목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은 회계와 세무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같은 기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업권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규정함에 있어서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대상을 열거하는 소득세와 달리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장부에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회계 상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고, 가상자산을 판매 또는 증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이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회계기준 해석이 존재함에도 해당 해석은 가상자산보유에 대한 회계처리만 제시하고 있고, 발행 등 다양한 가상자산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법인세 세무처리에 대한 쟁점이 아직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연구 방법

본 프로젝트는 가상자산 관련 감사보고서 및 국내 가상자산 관련 학술지 등 문헌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법인세 세무처리지침에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은 2022년 외부감사보고서로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대상

기업은 18개 법인기업으로 발행단계는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발행이 금지된 점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그 외 단계는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외부감사보고서가 있는 기업과 코인예치사업자(업라이즈)를 선정하였다.

<표 2> 사례연구 대상기업 감사보고서(2022년) 현황

구분	대상기업	감사보고서	회계기준	기업 수
발행 및 보유기업	상장기업 등	연결감사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개
가상자산 거래소	비상장기업	감사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개
			일반기업회계기준	5개
기타기업	비상장기업	감사보고서	일반기업회계기준	2개

II. 가상자산 회계 및 법인세처리에 대한 이해

1. 가상자산의 개념

1) 가상자산의 정의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게임아이템,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은 제외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그 기능에 따라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³. 지불형(payment) 가상자산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상자산으로 법정 통화의 지불기능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 한다. 유틸리티형(utility) 가상자산은 현재 또는 장래의 제품,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일종의 서비스 이용권이다. 증권형(securities) 가상자산은 발행인에 대한 채권 또는 자산의 지분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증권형 가상자산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자산 기반 증권형 가상자산과 디지털 기반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2) 가상자산의 구성

(1) 블록체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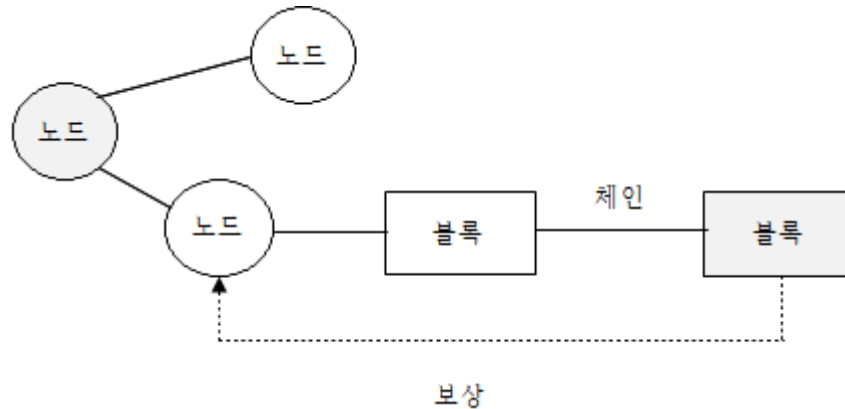
블록체인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익명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상자산의 시작은 블록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상금에서 시작했다. 블록체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암호학 커뮤니티의 메일링 리스트에 9쪽 짜리 논문을 첨부하면서 시작하였고 해당 논문에는 ‘블록’과 ‘체인’이라는 단어만 등장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한다.

³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법률,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Markets in Crypto-Assets)’에서는 암호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하고, 증권형토큰으로 분류되는 암호자산은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은 암호자산,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EU암호자산시장 법률안, 한국은행, 2022.8월).

(2) 블록체인의 구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비트코인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도



① 노드

네트워크 참여자를 ‘노드’라 하고 자기와 연결돼있는 노드를 ‘피어(peer)’라 부른다. 노드와 피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서버이자 동시에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다.

② 블록과 체인

블록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에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비트코인 주소, 비트코인 이전금액, 전자서명 데이터로 구성된 트랜잭션(거래내역)을 저장한다. 블록들은 생성된 순서대로 먼저 만들어진 블록 뒤에 일렬로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블록은 마치 체인에 묶인 것처럼 일렬로 줄지어서 논리적으로 저장되는데, 이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블록들의 체인’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곧 블록체인(Block Chain)이란 신조어로 정착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저장하고 모두가 검증하는 분산 네트워크(또는 분산원장)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일정한 시간 경과 시 주기적인 데이터의 재검증을 피하고자 해시함수와 비대칭암호화기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검증한다. 노드는 해시함수 푸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해당 거래에 참여했음을 증명(작업증명, Proof of Work)해야 하며, 이런 작업증명을 통해 블록에 기록이 완성되면 이를 채굴이라 한다.

③ 보상금

블록의 완성(채굴)에는 컴퓨팅 자원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을 완성한 노드에

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갑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지갑소프트웨어는 블록체인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아니며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블록체인의 변형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변형으로 블록 저장공간에 트랜잭션은 물론 임의의 프로그램 코드도 저장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나왔다. 이때부터 블록체인의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 이더리움을 주고받는 정적인 기록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블록에 저장한 뒤 호출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쉽게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더리움은 이 기능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라는 이름을 붙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앱/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으로도 명명한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이전에 관한 것을 구성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코인은 자체 네트워크(메인넷)를 구축한 것을 지칭하고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 없이 프로그램만 작동한다는 의미로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이더리움은 두 가지 표준적 스크립트 템플릿(ERC-20, ERC-721)을 제공하여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ERC-721으로 만든 토큰은 각각이 고유물이며 그 가치가 모두 달라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불린다(이병욱, 2021).

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기준

1) 국제회계기준 회계지침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에서는 2019년 6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지침(IFRS, 2019. 6, Holdings of Cryptocurrencies.)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의 특성⁴을 정의하여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⁴ 가상자산의 특성은 a.보안을 위해 암호화하는 분산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또는 가상의 통화로, b.관할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아니하고, c.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생기게 하지 아니한다(PWC, 2022. 2, 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2) 미국 회계지침

미국 회계기준(US-GAAP)에서도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입장이며,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여러 기업들의 가상자산 회계기준 마련의 요구가 지속되어, 2023년 3월 27일 FASB에서는 암호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공개초안(Intangibles—Goodwill and Other—Crypto Assets, Subtopic 350-60)을 발표⁵했다.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가상자산은 실제 법정화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 금융상품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AICPA, 2021, Accounting for and Auditing of Digital Assets). 또한 최근 미국 SEC는 가상자산 보유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고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SEC, 2022. 3. 31, 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1(SAB 121), 가상자산 위험에 따른 투자자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력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회계지침을 발표하며 SAB (Staff Accounting Bulletin) 121에서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된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회계지침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해석(2019-I-KQA017)에서는 먼저 가상자산을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하며,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분류했다.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해석(2018-G-KQA006)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자산은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그러한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러한 시장이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회수가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로 인식할 수 있다.

⁵ Proposed Accounting Standards Update(Issued: March 23, 2023, Comments Due: June 6, 2023).

3.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처리

1)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세법은 특정항목의 소득을 열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이 아닌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순자산증가설)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원칙(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된다. 가상자산을 여러 번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법인세법은 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가상자산 평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과 그 밖의 가상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⁶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와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 거래 집계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20조의 4).

⁶ ‘국세청고시 제2021-58호’ 따라 두나무㈜,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Ⅲ. 선행 연구

1. 국내 회계처리 선행연구

김경원 등의 논문(2021)은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로 파악하는 사례연구이다. 사례분석 대상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SPDR 금 신탁, 번지, 그리고 한국의 한빛소프트와 두나무이다. 해당 논문을 요약하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으나, 암호화폐의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기준서의 제정 및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IFRS 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pretations Committee)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존 기업들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개발해 사용하고 있던 회계처리와는 상이하고,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판매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재고자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상품과 유사하다. 반면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일반상품이나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TPL) 금융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실제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 적용 시 발생 가능한 한계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사업목적과 투자목적에 따른 암호 화폐 회계처리를 위해 ‘투자자본자산’의 개념을 제안하고, 무형자산 기준서 개정 역시 제안한다.

심재연 등의 논문(2021)은 국내 기업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가상화폐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 논문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017년 이래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공시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기타의 무형자산 금액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등 다소 모호한 주식공시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가상화폐 보유 기업 현황 및 관련 사례기업 분석을 통해서 가상화폐 보유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식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시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가상화폐 공시 방식에 대해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투자 금액 수준이 유의미한 정도라면 주식공시 시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코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공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가상화폐 발행 기업의 경우 가상화폐 백서 내 고객에 대한 수행 의무 등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주식 등에 명확하게 공시하고 가상화폐의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요구하는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승임 등의 논문(2023)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지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보유에 관련된 거래와 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실무에서 관찰되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거래의 흐름을 살펴보고, IFRS IC의 최종결정과 그 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를 발행자의 관점과 보유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행자 관점에서 가상자산 발행시 의무가 존재하는지, 프리마이닝 코인이 자산인지, 보유자 관점에서 청구권 있는 가상자산인지 등 회계처리를 위한 기본 전제에서부터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 의무 관계의 모호함, 프리마이닝 코인이나 토큰의 소유 관계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완전히 새로운 거래의 속성 등도 가상자산 회계의 개발을 위하여 고민해야 하는 이슈로 제시했다. 보유자 관점에서도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이 중요한 회계 이슈로 제시했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회계 이슈를 고려하여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규제가 마련되고,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선제적으로 국내 기업이 적용할 회계기준 및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데 정책적 개선점을 제공했다.

2. 국내 세무처리 선행연구

윤현석은 그의 논문(2019)에서 가상화폐가 자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가상 화폐를 지급수단인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경근은 그의 논문(2020)에서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한 후 그 내용을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안’,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안’ 및 ‘기타 미비점’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고, 발견된 미비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내용 및 제안을 요약하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소득을 사실상 ‘양도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하면서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구분은 소득세제를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조세분쟁 유발 등 상당한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가상자산의 소득구분을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지정하는 것은 ‘거주자에 대한 과세’ 경우 사안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기타 미비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또는 면세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소현 등의 논문(2023)은 가상자산 개인소득과세를 중심으로 과세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해 검토한 논문이다. 해당 논문을 요약하면 가상자산은 비대칭 암호화 기법, 합의 알고리즘, 해시함수 등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따라 구현된 분산원장 시스템에 참여하여 블록의 생성과 검증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며,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지되고 있는바, 이를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된 상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상자산 소득을 현재 과세제도상의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가상자산의 본질에 더 적합한 분류이며,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분류는 우리 세법이 취하는 소득원천설의 관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소득 분류이며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소득분류도 아니고 과세방식 또한 정교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그 기반이 되는 기술에 있는 점, 그리고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동기가 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더 적합한 과세 방식으로 보인다고 한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경우,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비록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으나 그 계산방식은 양도소득의 계산방식을 취하였으므로 가상자산 소득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는 식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실제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가능 한 다양한 개별 상황이 예상되는바, 납세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적 경쟁력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도입을 늦추되 향후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과세시기에 대한 조정을 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V. 사례 분석

1.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개발

1)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이 판단을 할 때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 및 측정개념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도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질의회신(2018-G-KQA006)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지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회계질의회신 중 가상자산 회계정책 개발 관련 주요 내용

재무제표 표시	가상자산이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함. 그리고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자산의 평가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자산은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그러한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러한 시장이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회수가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로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는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이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식공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 및 금액(회사가 보관하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별도로 구분), 후속기간의 가상자산 공정가치 하락 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정보를 주식에 공시한다.

자료: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내용을 저자 재정리

2) 감사보고서 사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을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표 4>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개발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그라운드엑스	당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없으므로, 2019년 6월에 IFRSIC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다.
두나무	연결회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 사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빗	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가상자산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2.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가상자산 발행자는 코인이 사용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리마이닝 코인(플랫폼 론칭 전 생성한 코인)을 보유하고 유통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론칭 후에도 생태계 지원활동에 관여한다.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회계처리 이슈는 ① 가상자산의 개발비용 자산화, ② 가상자산 발행매각에 따른 수익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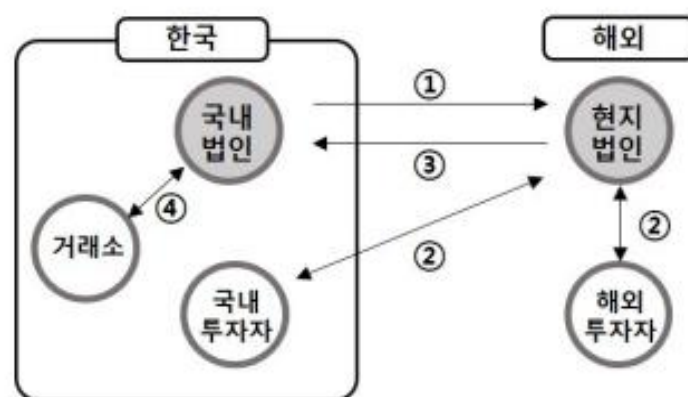
1) 가상자산 발행

지난 2017년 9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Initial Coin Offering)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보도자료,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 2017. 9. 1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2017. 9. 29.) 하겠다고 하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 ICO 금지로 현재 국내 법인들은 ICO가 합법이면서 그 진행이 용이한 싱가포르, 스위스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ICO의 주체를 해당 현지법인으로 하여 ICO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승기, 김성호, 2018).

(1) 가상자산 발행 절차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ICO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구조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국내 법인의 해외 ICO 진행 구조



① 우선 ICO를 진행할 국가에 현지법인⁷을 설립한다. ②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의 ICO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ICO를 진행⁸ 하고 가상자산 발행을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이더(Ether) 등의 가상자산 또는 법정화폐를 수령한다. ③ 현지법인은 수령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한 후 이를 모회사로 송금⁹하거나 이더 등 가상자산을 모회사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 ④ 모회사는 수령한 가상자산을 필요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원화를 취득한다.

(2) 가상자산 개발비용

가상자산 발행 전 단계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할 네트워크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다른 네트워크에 연계시키기 위해 개발 활동이 진행된다. 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당기비용 처리할지, 자산화 할지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한다.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기준서 1038 문단 23]. 일반적으로 플랫폼 개발단계에서는 가상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표 5> 가상자산 개발비용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위메이드	연결실체는 디지털자산 WEMIX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자산화하지 않고 모두 당기비용처리하였으며,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카카오	연결회사는 디지털자산 KLAY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자산화하지 않고 모두 당기 비용처리하였으나, 연결회사가 채굴 보상 등 제3자로부터 KLAY를 유상으로 취득한 수량이 있어서 당기말 현재 보유 중인 디지털자산 KLAY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492억 원입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⁷ 해외 현지법인은 이더리움 재단 등 비영리조직(예: 재단이 ICO 관련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암호화폐는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처리) 또는 영리조직으로 설립하며 현지법인의 네트워크 참여 정도에 따라 발행자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영리법인을 가정한다.

⁸ ICO 진행 절차는 “백서(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발행 → 프리마이닝(생태계 지원목적으로 발행자가 가상자산을 공식 발행하기 전 사전에 채굴해 놓은 가상자산을 사전 발행하는 것) → 사전 판매 → 플랫폼(네트워크) 론칭”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다.

⁹ 일반적으로 모회사인 국내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이 현지법인에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로 송금한다.

(3) 가상자산 발행매각

가상자산 발행자가 ICO를 수행하면서 현금을 수취(발행매각)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실무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① 고객정의 충족

투자자들이 기준서의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만약 투자자가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므로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과의 계약 및 백서 상 의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투자자들이 ‘고객’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투자자들과의 계약 및 백서 상 의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적용한다.

② 수행의무 인식

일반적으로 백서에 언급된 의무까지 계약상 수행 의무로 보아 수익을 이연 처리하고,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들(고객정의 충족)과의 계약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표 6> 가상자산 발행매각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컴투스홀딩스	연결실체는 XPLA의 사전판매약정, 일반판매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XPLA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금이나 타사 발행 암호화자산을 수령하고 연결실체가 발행한 암호화자산을 외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연결실체는 판매 거래의 대가로 현금 또는 암호화자산을 수령한 경우 무형자산을 인식하면서 XPLA의 판매와 관련된 의무를 계약부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암호화자산을 판매하는 거래에 있어 계약상 대가의 지급 및 XPLA를 제공받는 거래 상대방이 XPLA의 백서 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의제의무를 식별하여 관련 의무가 모두 수행되었을 때 계약부채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

위메이드	연결실체는 파트너십&투자, 마케팅, 플랫폼, 커뮤니티 등에 WEMIX를 사용하였으며, 사전구매약정, Private sale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WEMIX를 판매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Private Sales 등, 파트너십, 마케팅, 플랫폼, 커뮤니티등에 WEMIX를 직접 활용하고, 공정가치를 선수수익(계약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수수익은 Wemix Network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수한 WEMIX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날	연결회사는 2019년 발행 당시 PCI의 제공을 대가로 수령한 금액 및 IEO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이전을 완료하고 추가적인 수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궁극적인 사용환경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환경의 구축(10만개의 가맹점, 250만명의 사용자 확보), 국내 메이저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및 비트코인 연동을 통한 거래활성화, 글로벌 카드사 제휴를 통한 가맹점 확대로 고객들이 결제, 교환 등을 통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수행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 이를 매출로 인식(매출 인식 금액: 2,261,431,112원)하였습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2)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주요한 회계처리 이슈로는 ① 제3자 가상자산 유상취득, ② 노드 운영에 따른 리워드 수익인식, ③ 에어드랍 등 무상취득, ④ 공정가치 측정, ⑤ 용역의 대가로 가상자산 지급 등이 있다.

(1) 제3자로부터 가상자산 유상취득

일반 기업이 제3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된다.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에 따라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표 7> 제3자로부터 가상자산 유상취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퓨처스트림네트웍스	연결실체는 디지털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개별 취득 가격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취득 시 화폐성 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화폐성 자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디지털자산의 원가를 측정합니다.
넷마블	연결실체는 가상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개별 취득 가격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취득 시 화폐성 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화폐성 자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의 원가를 측정합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취득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가상자산의 원가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빈번한 유출입으로 인해 단위원가 측정시 개별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일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2) 노드 운영에 따른 리워드 수익인식

기업이 별도의 용역계약 없이 백서에 따라 노드를 운영하여 트랜잭션의 실행, 블록 생성 및 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발행자(제3자)로부터 코인을 리워드로 받기도 한다. 이 경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노드 운영에 따른 리워드 수익인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LX인터내셔널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사(General Council Officer)로 참여하여 암호화폐인 Klay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는 유의적인 취득원가가 소요되지 아니하여 비망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7,484,146 Klay (전기말 : 7,484,146 Klay)를 보유중입니다.
컴투스홀딩스	연결실체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검증인으로서 노드운영에 참여하여 대가로 받는 보상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게이밍플랫폼에서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재화와 토큰의 교환, 암호화자산 간의 교환, NFT민팅 등에 따른 서비스 이용 대가, 그리고 유저간 NFT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암호화자산 XPLA 또는 CTXT를 수령하게 됩니다. CTXT는 게이밍플랫폼에서 해당 게임이 온보딩 될 때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으로써 XPLA 및 게임재화, 게임토큰 등과 교환되며 해당 게임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가치를 갖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상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

자료: 감사보고서

(3)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상취득¹⁰

가상자산 취득 사유는 일반적인 매매거래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에게 발행자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이 있고, 계약 없이 백서에 따라 취득하는 무형자산으로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을 것 보인다.

<표 9> 에어드랍 등 무상취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네오위즈	에어드랍 등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장부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토큰은 기타로 분류됩니다.
------	---

자료: 감사보고서

① 스테이킹

회원이 회사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지갑에 특정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동결된 가상자산은 지분증명 방식(PoS)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지원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를 통해 재단으로부터 동결된 가상자산을 기초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상을 지급받는다.

② 하드포크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분리되어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성되는 경우, 특정 시점에 기존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하드포크는 재단 또는 기존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 여부가 결정되며, 회원은 하드포크의 결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 수량에 지급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¹⁰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내용은 국세청 질의회신(법무과-3799, 2022.08.02) 내용 참조

수량을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무상 지급받는다.

③ 에어드랍

특정 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무상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에어드랍은 제휴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지급한다.

<표 10> 스테이킹 · 하드포크 · 에어드랍의 비교

구분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지급주체	발행재단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발행재단	발행재단
지급대상	서비스 이용회원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
지급 가상 자산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이종 가상자산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지급수량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기존 가상자산 × 지급 비율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지급사유	가상자산 동결에 대한 대가	기존 블록체인의 분리 등	제휴, 마케팅 또는 이벤트

자료: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저자 재정리

(4)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¹¹ 측정

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후 원가모형¹² 또는 재평가모형¹³으로 후속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활성화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모형, 활성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¹¹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23.7.7.)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안)”에는 공정가치를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가 시장참여자, 정상거래 등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시장가치(거래가격 또는 시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¹²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23)

¹³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24)

<표 11>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네오위즈	연결실체는 매매차익 확보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취득 시 지급한 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매 보고기간마다 거래빈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활성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따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암호화폐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 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메타보라	연결실체는 후속 측정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74에 따른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암호자산의 장부가격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을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암호자산의 공정가치를 코인마켓캡에 공시되는 주요 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5) 용역 또는 투자의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

가상자산 보유자 또는 발행자가 용역을 제공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거래¹⁴와 유사하게 비용과 계약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투자 형태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에 해당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해당 선급금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선급자산의 회계처리와 유사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용역 또는 투자의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컴투스홀딩스	연결실체의 암호화자산 발행회사는 XPLA 메인넷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태계에 참여한 구성원들
--------	--

¹⁴ (모바일)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시점에는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 판매가격이 아닌 상품권 액면금액을 수익 인식한다(제1115호 문단 70).

	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유지·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로 XPLA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상의 금액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로 해당 활동의 귀속시기 및 용역제공 기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면서 XPLA의 지급과 관련된 의무를 계약부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제공받고 암호화자산을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 연결실체는 계약상 의무 및 XPLA를 제공받는 거래상대방이 XPLA의 백서 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의제의를 식별하여 관련 의무가 모두 수행되었을 때 계약부채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네오위즈	ICO 투자시 암호화폐로 투자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투자한 암호화폐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3. 가상자산거래소

1)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방법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는 가상자산 자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거래매개수단인 ‘포인트’를 거래소로부터 직접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간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래소의 ‘포인트’ 부여는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게 거래소가 자체 마련한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부여하여 거래하고 있다(박재평, 2023).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규제 및 시장 이용자의 자산보호 등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실명확인¹⁵ 및 트레블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1)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

¹⁵ “신한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법인들은 신한은행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길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그동안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해왔다”(문정은, “법인 가상자산 거래 숨통트나.. 신한은행, 첫 법인계좌 내줘”, 디지털투데이, 2022.04.07.)

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2) 트레블룰 (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①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명칭과 대표자 성명) ②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 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과 보관 내역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0).

2)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회계 이슈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자체)보유와 ‘고객 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이슈가 있다.

(1) 가상자산의 취득 및 측정

가상자산을 종전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무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으로 후속회계처리하고 있다.

<표 13>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취득 및 측정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두나무	① 가상자산의 성격 연결회사는 가상자산을 당국의 법령과 규제변경 등으로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업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연결회사가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가상자산의 후속 측정 연결회사는 가상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
-----	--

	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 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가상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가상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배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한국시간 00시 00분 기준)을 공정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내므로, 연결회사는 가상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코인원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시점에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내므로, 회사는 가상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는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자산의 평가손익을 가상자산평가이익(손실)의 과목으로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내 가상자산으로 인식

자료: 감사보고서

(2) 제3자 위탁 가상자산¹⁶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거래소 자체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 논란이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의 정의를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갖는 권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재무제표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표 14> 가상자산거래소의 제3자 위탁 가상자산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코빗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회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회원의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빗썸코리아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리미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오미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¹⁶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안)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보유 시장가치 총액을 공시하며,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매우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예: 해킹위험 등)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V. 전략적 제안

1. 국내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처리

1)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국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¹⁷⁾’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¹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자산의 판매손익, 용역제공 등 거래의 종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익금 및 손금에 대하여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1) 권리의무확정주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손익귀속원칙을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익금의 확정’이란 익금에 대한 권리의 확정을 의미하고, ‘손금의 확정’이란 손금에 대한 의무의 확정을 의미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말하는 권리확정이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확정, 즉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각 권리의 발생요건이라든가, 유효요건을 충족하고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 즉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말한다(고성춘, 2008).

¹⁷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¹⁸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2) 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이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2조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평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가상자산의 발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수행의무라는 별도의 회계처리 단위를 통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경우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백서 등에 기업의 수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구별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위한 약속이다. 약속은 명백하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상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상 수행의무의 범위는 법률적 의무보다 큰 경제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발행자의 의무에 대하여 백서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명시적인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백서에 기술된 내용(예: 플랫폼 사용환경 조성) 중 어디까지 발행자를 구속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회계처리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① 견해1: 가상자산 발행대금을 수취한 시점에 이연수익(선수금)으로 인식하였다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가상자산 발행단계에서 가상자산 인도 외에 부담하는 의무는 없지만, 플랫폼 사용환경 조성 등 관련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가상자산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사용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견해이다.

② 견해2: 가상자산 발행대금을 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가상자산 발행거래에서 발행자의 수행의무 부담 주체 및 존재 등을 파악하고 수행의무에 대한 대가를 수취했다면 가상자산 발행대금을 발행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견해1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은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익을 인식하므로 가상자산을 인도하고 발행대금을 수취한 시점에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며 플랫폼 사용 환경 조성까지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다르게 수익을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¹⁹.

(3) 법인세 처리

법인세처리는 최근 국세청 견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시점을 익금의 손익귀속시기로 보고 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가상자산발행시점이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된 상태에 해당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서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표 15> 가상자산 발행 관련 국세청 해석²⁰

1. 질의 내용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 인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 인식

2. 국세청 회신

1안이 타당하다. 즉,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한다.

(4) 해석변경 제안

백서에 따른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 ‘수행의무’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국세청 해석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해도 특별한 문제가 발

¹⁹ 국내에서는 ICO 금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가상자산 발행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²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03.06

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석변경을 제안한다.

<표 16>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 및 법인세 처리 사례

넷마블	① FNCY 백서의 주요 내용 - 개발 목적 연결실체는 게임, 디지털 휴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웹툰·웹소설), 커머스, 전자지갑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FNCY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생태계 내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교환수단으로 FNCY를 개발 및 발행 - 기술적인 특성 FNCY 메인넷은 PoSA(Proof-of-Staked-Authority) 합의 메커니즘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EVM(Ethereum Virtual Machine)을 기반으로 합니다. FAM(FNCY Authorities Members)은 탈중앙화된체인 거버넌스 및 최대 5,000 TPS를 기반으로 최고의 보안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프로토콜 경제" 생태계를 조성
	② 수행의무의 충족여부 FNCY 백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FNCY는 게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콘텐츠 및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FNCY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FNCY 생태계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액적 효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③ 회계처리 당기 중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이연수익계정으로 회계처리
	④ 법인세 처리 현행 해석) 가상자산 발행시점에 수취한 대가를 익금으로 법인세 처리 제안 해석) 가상자산 관련 수행의무 완료시 익금으로 법인세 처리

자료: 감사보고서 및 국세청 질의회신 저자 재정리

3) 가상자산의 보유

과세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결정은 자산·부채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결정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보유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을 인정받아 기업회계와 법인회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

(1) 가상자산의 원가법: 선입선출법

원가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러한 원가법으로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 외국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처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열거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개인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법인은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국내세법뿐만 아니라 조세조약도 확인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은 OECD 모델조세조약 규정과 같이 원천지국에서는 과세권이 없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이경근, 2020).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그 소득이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면 양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과세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상자산의 대여나 인출로 인한 의제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취급을 한다²¹.

²¹ 해당 논문에서는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기타소득 대신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벤치마킹하여 ‘가상자산 양도소득’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조항이 마련되면 그에 대한 과세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되어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시, 조세조약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또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이라는 세분화된 소득구분이 없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목적으로는 해당 조세조약의 ‘양도소득 조항’을 적용하고 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규정한 과세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상자산 분류 관련 회계가이드만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어 실무상 회계처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규제 미비로 백서 등에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상자산으로 보유자가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발행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 프리마이닝 코인과 관련한 소유권 문제 등은 단순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계처리 결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가상자산 발행 전에 모두 설계되고 공유되어야 마땅하지만 사실상 발행자조차 이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와 발행자의 의도에 상당한 갭이 발생하고 혼란이 일고 있다. 둘째, 백서에 상세한 정보가 기재된다 하더라도 실제 법률상 권리의무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백서에 기재한 책임 제한이 유효한지 등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 셋째, 기업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통상의 거래를 해석해오던 관점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록으로만 존재한다는 점,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서 누군가의 의무에도 기반하지 않는 권리가 특정 생태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어 실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실체가 특정되지 않고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나 생태계가 상대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기존의 거래와는 극명한 차이이다(현승임, 한종수, 2023)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도 저해되고 있어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관련 공시요구사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서(안)과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을 발표하였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이슈는 법인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의 상당부분이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세법가이드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행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법인세 세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일반법인과 가

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 회계처리 이슈와 현황을 살펴보고 법인세 신고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법인 관점에서 가상자산 발행시 발행대금을 수취한 시점에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시점에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발행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손익인식시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백서에 따른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수행의무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해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평가규정을 신설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평가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한 세무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법인 관점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계산방식은 양도소득의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정을 고민해야 하는 이슈이다.

2. 시사점

본 프로젝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점을 제공한다. 국내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및 회계지침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유틸리티 토큰 손익인식시기에 대한 국세청 해석 변경검토와 더 나아가 기업회계기준 준용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적용원칙에 따라 별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제정 시 본 프로젝트가 기업의 회계처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형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지침에는 한계에 있으므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법인세서식도 필요하며 이는 지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성춘(2008), “조세법(상)”, 청보, 420-428.
- 구형건(2021),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글로벌금융연구, 2(1), 23-46.
- 기노성(2022),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의 신탁 -디지털 자산의 물권성 내지 재산성, 목시적 의사에 의한 신탁-”, 금융법연구, 19(2), 169-213.
- 김갑래(2022),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22-23),
- 김경원, 이수민, 김서영, 정다운, 지은상(2021),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30(6), 265-302.
- 김동수, 소진수(2019), “가상화폐의 회계 및 세무상 취급”, BFL, 89, 69-82.
- 김범준, 이채율(2021),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개선과제 -이용자 보호의 측면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2(3), 13-47.
- 김병일(2019),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과세문제”, 법조, 68(2), 309-349.
- 김우성(202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64(1), 129-181.
- 김홍기(2014),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15(3), 377-431.
- 김홍기(2022),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41(1), 1-50.
- 박재평(2021),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형사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1), 17-40.
- 성희활(2018),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37(1), 63-103.
- 심재연, 이승재(2022), “가상화폐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회계저널, 34(5), 1281-1300.
- 윤태영(2021),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토큰(token)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외법논집, 45(3), 283-300.
- 윤현석(2019),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법과 정책연구, 19(3), 329-360.
- 이경근(2020),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23(9), 505-556.
- 이병욱(2021), 헬로 핀테크(보안인증 · 블록체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10-233.
- 이소현, 박정우(2023),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33(1), 349-390.
- 정승기, 김성호(2018),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금융법연구, 15(3), 135-174.

최정희(2020),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5(2), 65-98.

한성훈(2019),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8(2), 125-148.

황주희(2022),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회계저널, 31(4), 191-211.

현승임, 한종수(2023),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의 회계 이슈”, 회계저널, 32(1), 141-185.

<외국문헌>

OECD, 2020, Taxing Virtual Currencies.

PwC, 2021. Annual Global Crypto Tax Report 2021.

<참고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

전자공시 다투 (<https://dart.fss.or.kr/>)